

# 공 고

## ○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-76호

### 전파법 위반(검사불응)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24일

부산전파관리소장

#### 1.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

시설자명	허가번호	호출명칭	주 소	위반내용	처분내용
김*연	42-2019-20-0000736	357수*호	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	무선국 정기검사불응 (3차위반)	무선국 허가취소
김*필	42-2023-20-0000036	300뉴필*호	경상남도 통영시 한실5길		
(주)오*파 이프	42-2022-20-0000346	300라*호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		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 및 제72조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전파법시행령 제118조(행정처분의 기준)

3. 처분일자: 2025. 12. 12.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,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.

나.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(☎051-974-5192, 팩스051-974-51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